

대전고등법원 2024. 12. 4 선고 2023나13648(본소), 2023나13655(반소) 판결 [지상물
매수청구 · 시설물 철거 등]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4. 12. 4 선고 2023나13648(본소), 2023나13655(반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19가합109494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담당변호사 서재국, 박성령

변론 종결 2024. 10. 23.

판결 선고 2024. 12. 4.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19가합109494(본소), 2021가합104331(반소)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대전 서구 C 잡종지 7,398㎡ 중 별지1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84㎡ 지상에 설치된 유리외벽, 같은 도면 표시 42, 43, 41, 40, 44, 45, 22, 4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8㎡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36, 35, 46, 47, 3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1㎡ 지상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 같은 도면 표시 43, 48, 49, 50, 51, 2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에 설치된 아크릴 차양막(캐노피), 같은 도면 표시 28, 52, 53, 3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에 설치된 아크릴 차양막(캐노피), 같은 도면 표시 34, 54, 55, 56, 4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에 설치된 아크릴 차양막(캐노피), 같은 도면 표시 39, 57, 58, 4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ㄸ 부분 지상에 설치된 차양막(캐노피)을 철거하고,

2) 138,716,827원 및 그 중 29,208,000원에 대하여 2020. 10. 18.부터, 27,985,000원에 대하여 2021. 10. 18.부터, 27,849,000원에 대하여 2022. 10. 18.부터, 27,713,000원에 대하여 2023. 10. 18.부터, 18,724,000원에 대하여 2024. 5. 25.부터 각각 2024.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80%를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20%를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①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232,390,053원 및 2023. 10. 1.부터 ①항의 돈을 지급할 때까지 월 5,466,64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②항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대전 서구 C 잡종지 7,398㎡ 중 별지1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84㎡ 지상에 설치된 유리외벽, 같은 도면 표시 42, 43, 41, 40, 44, 45, 22, 4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36, 35, 46, 47, 3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1㎡ 지상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 같은 도면 표시 43, 48, 49, 50, 51, 2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설치된 아크릴 차양막(캐노피), 같은 도면 표시 28, 52, 53, 3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설치된 아크릴 차양막(캐노피), 같은 도면 표시 34, 54, 55, 56, 4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설치된 아크릴 차양막(캐노피), 같은 도면 표시 39, 57, 58, 4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설치된 차양막(캐노피)을 철거하고(주문 제1.가.1)항과 같음), 별지2 목록 건축물(별지3 도면 표시 자3, 차3, 카3, 타3 부분)을 인도하며, 592,272,220원 및 그 중 116,485,185원에 대하여 2020. 10. 18.부터, 118,942,592원에 대하여 2021. 10. 18.부터, 131,474,074원에 대하여 2022. 10. 18.부터, 138,131,481원에 대하여 2023. 10. 18.부터, 87,238,888원에 대하여 2024. 5. 25.부터 이 사건 2024. 7. 5. 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4. 5. 25.부터 별지2 목록 건축물(별지3 도면 표시 자3, 차3, 카3, 타3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410,99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등을 구하는 대상을 별지2 목록 건축물의 부지인 토지에서 별지2 목록 건축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금액을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의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92,272,220원 및 그 중 116,485,185원에 대하여 2020. 10. 18.부터, 118,942,592원에 대하여 2021. 10. 18.부터, 131,474,074원에 대하여 2022. 10. 18.부터, 138,131,481원에 대하여 2023. 10. 18.부터, 87,238,888원에 대하여 2024. 5. 25.부터 이 사건 2024. 7. 5. 자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4. 5. 25.부터 별지2 목록 건축물(별지3 도면 표시 자3, 차3, 카3, 타3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410,99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6쪽 15행의 "시건 장치를 해 놓은 채 인도하지 않고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과 같다.

『잠금장치를 해 놓은 채 인도하지 않고 있다가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시점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이 사건 2024. 8. 21.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주차장 중 지하층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개방하여 사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원고는 같은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주차장 중 지하층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개방한 시점이 2021. 6.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그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한 증거들(갑24~2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따르면, 위와 같이 잠금장치가 해제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해제 시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21. 6.경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그 후에 이루어진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당시에도 이 사건 주차장 중 지하층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중 지하층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개방하였음을 알린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4. 8. 21.경에는 이 사건 주차장 중 지하층이 피고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잠금장치가 해제된 시점을 다투면서도 원고의 준비서면이 송달될 무렵에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있는 사실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중 지상층도 인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갑 22~25,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 중 지상층은 2019. 10. 1.경 인도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상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에 대하여

-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 2) 판단 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고(민법 제256조 참조), 여기의 권원에는 임차권이 포함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임대인과 임차인이 토지와 그 지상의 기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와 기존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하였던 당초의 임대차계약이 신축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46027, 46010 판결의 취지 참조).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민법 제643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민법 제643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본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이 사건 주차장은 그 자체로 건립이 완료된 지상시설물에 해당하고, 토지와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인의 승낙 하에 축조되었다고 보이므로,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자로서 피고 소유 토지에 건립한 것이라면, 그것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인지와 상관없이 부지인 피고 소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사건 매매단지 인근에 'K 우회도로(광로L 외 2개 노선)'를 건설하는 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단지 진출입로 부지가 공사구간 내로 편입되어 잔여지로 진출입이 가능한 통로 등이 필요하게 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1) 등에 근거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용 부담 하에 이 사건 매매단지 중 D단지에 속하는 C 토지 일부의 지상에 있던 기존 주차타워를 철거하고, 별지2 목록 및 별지3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을 신축하였다(제1심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차장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한 잔여지의 손실에 대한 보상' 또는 '잔여지에 통로 등의 신설이 필요하여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으로서 신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을 원시취득한 소유자는 잔여지 및 기존 주차타워의 소유자인 I 등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I 등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2), 원고가 I 등의 승낙을 받아 건축주가 되었다거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I 등이 D단지 내에 건립된 이 사건 주차장만을 D단지의 임차인에 불과했던 원고의 소유로 남겨둘 만한 사정을 좀처럼 찾기 어렵다. I 등은 원고 등을 비롯한 자동차 매매상들이 당시 공사구간 내에 편입되어 보상대상이 된 토지나 지상

건축물을 직접 점유·사용하면서 영업을 했던 점을 고려하여, 그 보상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나 건축주 신고 따위의 관련 업무를 맡겨둔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주차장을 신축할 때, 당시 그 부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I 등이 원고에게 "<가설>건축물 설치,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 <가설> 건축물 설치, 사용승락서"(갑6-7)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문건에서 이 사건 주차장을 "가설"건축물로 지칭한 점과 함께 이 사건 주차장의 신축 및 사용 경위,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만을 임차인인 원고의 소유로 남겨둘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I 등은 원고와의 D단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한편,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국적으로 종료된 후, D단지를 개편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차장이 불필요해지거나 새로운 주차장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철거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를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자라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①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단지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단지를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등의 임대차보증금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원고 등 임차인 내지 전차인들이 피고에게 일부 차임 등을 송금하거나 공탁을 하기는 하였다(갑14-1). 그러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이행인수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원고 등이 피고의 은행계좌로 차임을 송금하거나 공탁을 한 것은 피고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일방적으로 행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는 2016. 6. 이후에는 그 계좌를 폐쇄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1. 6. 14.경에는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인 자동차매매상들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가 제시하는 새로운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갑14-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단지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제1 선행 소송 및 제2 선행 소송의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민법 제622조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주차장 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 설치한 유리외벽 등과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권이 모두 토지 소유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과 유리외벽 등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은 당초부터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차장에 설치된 유리외벽 등은 피고가 반소로 철거를 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주차장에 부합되어 피고의 소유로 되었다거나 피고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취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차장은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그 지하층인 별지3 도면표시 '자3', '차3', '카3', '타3'부분에 해당하는 별지2 건축물(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잠금장치를 해 놓은 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권원 없이 점유하다가 2024. 8. 21.경 인도한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 유리외벽 등을 설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항소심 감정인 O의 임료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임료액은 아래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으며, 2024. 5. 25. 이후의 임료액은 같은 액수로 추인할 수 있다.

1	2019. 10. 18. ~ 2020. 10. 17.	29,208,000
2	2020. 10. 18. ~ 2021. 10. 17.	27,985,000
3	2021. 10. 18. ~ 2022. 10. 17.	27,849,000
4	2022. 10. 18. ~ 2023. 10. 17.	27,713,000
5	2023. 10. 18. ~	18,724,000

1	2019. 10. 18. ~ 2020. 10. 17.	29,208,000
	2024. 5. 24.	
6	2024. 5. 25. ~ 2024. 8. 21.	7,237,8274) 감정인의 산정 방식에 따라 건물 기초가격 539,695,000원 × 기대이율 0.055 × 89/365(원 미만 버림)
합계	138,716,827	

나.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에 터 잡은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에 설치된 유리외벽 등을 철거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5)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임료 상당액인 138,716,827원 및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29,208,000원에 대하여 2020. 10. 18.부터, 27,985,000원에 대하여 2021. 10. 18.부터, 27,849,000원에 대하여 2022. 10. 18.부터, 27,713,000원에 대하여 2023. 10. 18.부터, 18,724,000원에 대하여 2024. 5. 2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지상층을 권원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6) 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의 한도 내에서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중 지상층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지상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취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상계 내지 공제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그 한도 내에서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서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동헌

판사이진영

판사이선미

별지

1)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2) 이 사건 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마쳐지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이 위와 같이 그 부지 소유자의 소유라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반소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을 철회하였다.

4) 감정인의 산정 방식에 따라 건물 기초가격 539,695,000원 × 기대이율 0.055 × 89/365(원 미만 버림)

5) 원고는 항소심 변론 종결 후에 제출된 2024. 11. 12. 자 준비서면 등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으므로, 원고에게 소유권 침해의 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자신의 소유로 믿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6) 2019. 10. 1.부터 2020. 9. 30.까지 46,934,559원, 2020. 10. 1.부터 2021. 9. 30.까지

57,483,594원, 2021. 10. 1.부터 2022. 9. 30.까지 61,461,099원, 2022. 10. 1.부터 2023. 9. 30.까지 66,510,801원, 2023. 10. 1.부터 사용종료일까지 월 5,466,641원